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
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179호, 2020. 3. 31. 공포, 2020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(안 제3조제8항, 제9조제7항, 제17조의2제7항)

-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,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

나.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, 방법(안 제17조의5, 별표2)

-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진 등 영상정보, 계량값 등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

다.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

적인 사항을 규정(안 제17조의6)

-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보증금 예탁기관으로 지정하고,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수출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보증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함

라. 과징금 부과를 위한 ‘부적정처리이익’ 산정방법을 규정(안 제19조의 4)

- 부적정처리이익은 불법수출시에는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에서 수입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뺀 값으로 하고, 불법수입시에는 수입자가 받은 처리비용과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의 합으로 함

마. 수출입 허가·신고 취소절차를 규정(안 제15조의2, 제17조의7)

- 수출입 허가·신고를 취소하려면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허가·신고를 취소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

바. 행정처분 확정시 위반사실 공표절차(안 제19조의3)

- 위반자 성명 및 주소, 위반사항, 처분내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 함

사. ‘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’ 지정 및 운영(안 제19조의7)

- 한국환경공단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, 수출입안전관리센터가 관련기관, 폐기물수출입자 및 처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(다만, 제7호에 따라 수입국 또는 경유국이 요구하는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욱 포괄적일 경우에는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)

⑧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포괄수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.)
2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
제9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(다만, 제10호에 따라 경유국이 요구하는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욱 포괄적일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)

⑦ 법 제 10조제6항에 따른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.)
2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수출입허가 취소절차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취소사유를 적시하여 허가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

시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출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7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

제17조의2제2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

- ⑦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자는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수출하려는 경우

가.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출 신고수리 당시 제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.)

나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
2. 수입하려는 경우

가.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입 신고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.)

나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
제17조의3을 삭제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5(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)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 또는 수출입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, 입력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2와 같다.

제17조의6(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한다.

②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보증보험 보험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보증금 : 보증금 산정기준·납부절차, 보증금 반환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증금 예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2. 보험금액 :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(해상운송료 및 국내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.)에 수출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려는 폐기물 양을

곱한 금액의 2배

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 및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2.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실제 수출입 통관 일 기준 6개월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0조에 따른 반입명령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.

⑤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였거나,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.

⑦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이 보증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, 반환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의7(수출입신고 취소절차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 수리를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취소사유를 적시하여 신고수리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출입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9조의3(위반사실 공표)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여야 한다.

1.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.) 및 주소(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의미한다.)
2.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
3.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조항
4.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, 처분권자, 처분내용

제19조의4(과징금의 계산방법 등)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정

처리이익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적정 수출의 경우 : 국내 적정처리 소요비용(부적정수출된 폐기물의 양에 제17조의6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)에서 부적정 수출자가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뺀 값으로 한다.
 2.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적정 수입의 경우 : 폐기물을 부적정 수출한 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하되, 다만 국내 수입후 폐기물을 불법방치, 투기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을 추가한다.
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수출한 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처리이익에서 공제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.
- ④ 제1항에 따fms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.
1. 과징금 부과 대상이 관련 자료를 이미 파기했거나 제출하지 않아

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

2. 천재지변, 화재, 전시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관련자료 및 내용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

제19조의5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

제19조의6(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)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3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,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
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 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(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

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)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9조의7(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)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.

②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구분에 따른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업무계획: 매년 2월 말일

2.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: 매월 말일

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법 제22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, 폐기물을 수출입하는자, 수출입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수입자”라 한다), 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”을 “법 제6조제1항, 제10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를 받거나 수출입신고를 한 자(이하 “수출입자”라 한다), 수출입폐기물”로, “수입폐기물의”를 “수출입폐기물의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“수입자로부터”를 “수출입자로부터”로, “수입자명”을 “수출입자명”으로, “입력하여야 한다”를 “입력(수출폐기물의 경우 국내 선적 후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인계인수 정보(운송선박명, 인수량, 수입국 도착일, 도착항,

통관일 등) 포함한다”로 하고, 같은 목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수출입자가 수출입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거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 수출입자는 운반 또는 인계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,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하고 폐기물 사진(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각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한 사진)을 전송하여야 하며, 예약 입력하였을 때에는 수입폐기물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, 수출폐기물의 경우 보세창고에 도착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.

)를 포함한다.) 하여야 한다. 다만,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다.

별표 2 제1호다목 중 “처리자”를 “수입폐기물의 경우 처리자”로, “인수량”을 “인수량, 계량값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처리자”를 “수입폐기물의 처리자”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수입자”를 “수출입자”로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“수입폐기물”을 각각 “수출입폐기물”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 중 “수입폐기물”을 “수출입폐기물”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 중 “수입폐기물”을 “수출입폐기물”로 하며,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내에서의 수출입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하여 여기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7조의2제1항, 제17조의2제2항제8호, 제17조의5, 제17조의6, 제19조의7,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)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3조(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8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(다만, 제7호에 따라 수입국 또는 경유국이 요구하는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욱 포괄적일 경우에는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)
8. (생략)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⑧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포괄수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환

제9조(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허가)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<신설>

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.)

2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
제9조(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허가) ①-----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(다만, 제10호에 따라 경유국이 요구하는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욱 포괄적일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

11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기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)

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법 제 10조제6항에 따른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입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.)

2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
제15조의2(수출입허가 취소절차)

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취소사유를 적시하여 허가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소명자료

제17조의2(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출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7조의2(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

6. (생략)

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8. (생략)

9. · 10. (생략)

③ ~ ⑥ (생략)

<신설>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법 제18조의6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

11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9. · 10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수출하려는 경우

가.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출 신고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

제17조의3(수입 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) 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 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,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.
<신 설>

라진 경우에 한한다.)
나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 2. 수입하려는 경우
 가.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(포괄수입 신고수리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.)
나. 최근 30일 내 촬영한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<삭 제>

제17조의5(수출입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)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 또는 수출입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,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.

<신 설>

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, 입력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2와 같다.

제17조의6(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한다.

②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보증보험 보험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보증금 : 보증금 산정기준 · 납부절차, 보증금 반환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증금 예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 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2. 보험금액 :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(해상운송료 및 국내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.)에 수출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려는 폐기물 양을 곱한 금액의 2배

③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 및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2.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실제 수출입 통관 일 기준 6개월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0조에 따른 반입명령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.

⑤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수출입

<신 설>

하려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였거나,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.

⑦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예탁기관이 보증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, 반환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의7(수출입신고 취소절차)

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7 제1항에 따라 신고 수리를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취소사유를 적시하여 신고수리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페

<신 설>

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출입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9조의3(위반사실 공표)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여야 한다.

1.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.) 및 주소(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의 의미한다.)
2.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
3.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

<신 설>

조항

4.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, 처분권자, 처분내용

제19조의4(과징금의 계산방법 등)

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적정 수출의 경우 : 국내 적정처리 소요비용(부적정수출된 폐기물의 양에 제17조의6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)에서 부적정수출자가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뺀 값으로 한다.

2.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적정 수입의 경우 : 폐기물을 부적정 수출한 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하되, 다만 국내 수입후 폐기물을 불법방치, 투기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을 추가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수출한 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처리이익에서 공제여부를 결정한다.

③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.

④ 제1항에 따fms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 각호를 의미한다.

1. 과징금 부과 대상이 관련 자료를 이미 파기했거나 제출하지 않아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

2. 천재지변, 화재, 전시 등에 준

<신 설>

<신 설>

하는 상황으로 관련자료 및
내용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
우

제19조의5(과징금의 부과 및 납

부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
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
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
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
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
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
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
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
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
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
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
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
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
알려야 한다.

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
수 없다.

제19조의6(과징금에 대한 가산금

부과 등) ① 법 제22조의4제1항
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의

<신 설>

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3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,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

③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 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(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)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9조의7(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 센터의 지정)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.

②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당해

연도 업무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구분에 따른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업무계획: 매년 2월 말일

2.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: 매월 말일

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법 제 22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, 폐기물을 수출입하는자, 수출입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47